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김태현

전화 041-640-4434 /팩스 041-640-4395

보 도 자 료

2022. 8. 18.(목)

제 목

화물차 트랙터 증차 관련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및 공여자들 전부 유죄 선고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(지청장 정종화)에서 구속 기소한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하여 현금, 비트코인 등 약 1억 8,000만 원을 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등에게 '22. 8. 11.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음
- 검찰은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충남도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,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여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었음
- 향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시까지 수사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
1

피고인

- A○○(38세,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, 7급)
- B○○(43세, 화물운수업)
- C○○(42세, 화물운수업)

2

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A○○

- '21. 2. 9.경부터 '21. 11. 12.경까지 피고인 B○○ 등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, 수표, 비트코인 합계 약 1억 8,000만 원을 받아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]

- 피고인 B○○, 피고인 C○○

- 피고인 A○○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고,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변호사인 것처럼 매도하고 합계 약 15억 6,000만 원을 편취하여 [뇌물공여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]

3

수사 및 공판 경과

- '22. 2. 16.

홍성군청 공무원 AOO 구속 구공판

- ※ 피고인 AOO 소유의 아파트 지분 1/2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을 받아 압류하였음

- '22. 3. 15.

화물운수업자 BOO 및 COO 구속 구공판

- '22. 5. 12. ~ '22. 7. 19. 총 6명 증인신문 및 의견서 제출

- ※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등 범행 부인

- ※ 수사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공소유지

- '22. 8. 11.

1심 전부 유죄 선고

4

선고 결과

순번	피고인	구형	선고
1	A○○	징역 10년, 벌금 4억 원, 추징 179,627,834원	<u>징역 10년, 벌금 3억 6,000만 원, 추징 154,781,398원</u>
2	B○○	징역 7년	<u>징역 5년</u>
3	C○○	징역 7년	<u>징역 6년</u>

- ※ 추징금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

-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충남도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,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여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었음
- 홍성지청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시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임 ☑